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여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권한 중 일부를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40조).

II. 검토의견

-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주서본 참조).

(규정의 명확화 필요)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여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¹⁾ 결정 권한 중 “공유수면에 인접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토지^와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안의 취지는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또는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공유수면”을 의미하고 있어²⁾ 이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시·도지사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시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괄호()”로 규정하고 있으나, 뒤 문장은 앞 문장의 예외를 보충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단서로 규정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현행과 같음)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② -----
다만, 제4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

	---. -----

바. 삭제 <2024.2.6.>

사.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

아.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복합용도계획

자.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의견 제시

1. ~ 3. (현행과 같음) 4.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u>도시·군관리계획(전체 구역 중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고,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와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공유수면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u>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ㄱ. 1. ~ 3. (개정안과 같음) 4.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u>도시·군관리계획(전체 구역 중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고,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또는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공유수면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u>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